

의안번호	2200183
의 퇴 인	차규근의원
회 답 일	2024.08.19.
추계번호	24D0516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4조의 2(수사기관 의 수용자 조사원칙)	수사기관이 수용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원격 화상 조사를 하여야 함.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구속 송치한 사건 피의자를 구속 기간 내 조사하는 경우나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수용자를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할 수 있음(제1항) 수사기관이 조사를 할 때에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4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, 수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영상녹화를 하여야 함(제2항) 단서에 따라 수용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수용자가 수사기관에 인치된 후에는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호송·계호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4조의2(수사기관의 수용자 조사원칙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원격 화상 조사를 하여야 할 경우, 교정시설에 조사실 추가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법무부는 최근 5년간 1일 평균 검찰청 수용자 출석 건수는 188건에 달하며, 수도권 청의 가중치를 반영할 경우 전국 교정기관에 최소 300실 이상의 전용 조사실 공간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

- 현재 대부분의 교정기관은 기존 건물에 조사를 위한 여유 공간이 없으므로 조사실 설치를 위해 건물 신축 또는 증축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출입 보안시스템 구축, 주차장 증설 등 부수적인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또한, 추가된 교정기관 내 시설·장비 등의 운영, 조사 시 수용자 동행·계호에 필요한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역시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1] 검찰청 수용자 출석 현황

(단위: 건)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	일평균
검찰청	69,931	49,035	34,704	34,691	43,481	46,368	188

자료: 법무부

- 또한, 현재 교정시설 조사실에도 영상녹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 37개소가 있음

[표 2] 교정시설 조사실의 영상녹화설비 설치 현황

(단위: 개소)

구분	설치	미설치	합계
교정시설	18개 기관 25개	37개 기관	62개 기관

자료: 법무부

- 법무부에 따르면, 교정시설 조사실 영상녹화설비 설치단가는 2022년 기준 40,62만 3,000원 수준임

[표 3] 교정시설 조사실의 영상녹화설비 설치 단가(2022년 기준)

(단위: 천원)

연번	항목	산출 근거	예산액
1	건축공사비(방음, 흡음, 방음문(강화유리 시창), 공기조화설비, 냉난방 시설 등)	재료비(방음, 흡음 등) 노무비 기타 경비(보험료, 환경보전비 등)	31,573
2	영상녹화시스템 장비 등(데스크탑 PC, 프린터, CCTV, NVR(네트워크 영상저장 장치), 책상, 의자, 웹 카메라, 마이크, 스피커 등)	데스크탑PC 및 네트워크 영상저장 장비 등 7,000천원 CCTV 장비 등 1,300천원 책상, 의자 등 750천원	9,050
합계			40,623

자료: 법무부

- 또한, 검찰청은 수용자 조사실을 별도 설치·운영하고 있지 않아, 검찰이 수용자 조사 시 영상녹화를 하여야 할 경우, 검찰청 내 영상녹화설비가 구축된 수용자조사실을 별도로 설치하는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
- 그러나 현재 추가 설치가 필요한 교정시설 조사실, 검찰청 조사실, 영상녹화시설, 조사 시 수용자 동행·계호에 필요한 증원인력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 부재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